

발간일자 : 2024년 11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말

존경하는 임직원 및 문화예술 관계자, 도민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공정 경쟁, 반부패, 준법 경영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도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하여 공정경제 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CP'란 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 및 행동 규범입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위반 행위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공정거래 관련 행동 기준을 제시해 임직원은 준법 및 윤리 의식을 향상시키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 예방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식이 문화예술계 전반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단 임직원 모두가 공정거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인택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경기문화재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책임지는 자율준수관리자 인권감사관 진용복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을 제정하여 그 도입을 기업에 권장하고 있는 윤리준법 시스템입니다.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소극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통한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공정경제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위해 모범거래모델을 경기도에 접목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임직원 모두가 지켜야 할 행동원칙과 업무 지침을 명확히 하고,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관련 규정이 업무 현장에서 준수되는지 감독하여, 이를 위반하는 임직원은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직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1.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여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업무처리를 우선순위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단순히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선도적으로 공정경제 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3. 우리 스스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더 좋은 개선 방안을 스투럼없이 자율준수관리자와 전담부서에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자율준수관리자와 전담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일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이며 기준입니다. 우리 재단과 임직원이 법규 위반으로부터 안전하고, 고객과 협력사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율준수관리자와 전담부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 인권감사관 진 용 복

목 차

대표이사 인사말	i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	ii
제1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1
1. 기본 개념	1
2. CP의 유용성	1
3. CP의 8대 도입 기준	2
4. CP등급평가제도	3
제2장 경기문화재단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4
1. 우리 재단 CP 주요 사항	4
(1) 자율준수관리자	4
(2) 자율준수편람	4
(3) 자율준수교육	5
(4) 내부감시체계	5
(5) 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5
(6) 법 위반 행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5
2. 업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5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5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특성 및 역할	6
(3) 우리 재단과 관련한 공정거래 법규	6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7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7
2. 거래거절	8
(1) 공동의 거래거절	8
(2) 기타의 거래거절	9
3. 차별적 취급	10
(1) 가격차별	10
(2) 거래조건차별	11
(3) 집단적 차별	11
4. 경쟁사업자 배제	12
(1) 부당염매	12
(2) 부당고가매입	12
5. 부당한 고객유인	13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13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13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14

6. 거래강제	14
(1) 끼워팔기	14
(2) 사원판매	15
7. 거래상 지위의 남용	15
(1) 금지 이유	15
(2) 행위 유형	15
8. 사업활동 방해	19
9. 위반 시 제재	20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공정거래법)	21
1. 개념	21
2. 합의의 개념	21
3. 경쟁제한성	22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류	23
(1) 가격협정	23
(2) 공급제한협정	23
(3) 시장분할협정	23
(4) 입찰담합	24
5. 제재와 자진신고제도	25
(1) 제재	25
(2) 자진신고제도	26
제5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27
1. 하도급법의 목적 및 특성	27
(1) 목적	27
(2) 특성	27
2.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27
3.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 내용	28
(1) 하도급계약 체결 단계	29
(2) 하도급거래 이행 단계	35
(3) 하도급대금 지급 단계	44
(4) 기타 금지 행위	47
(5)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의무사항	48
4.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48
(1) 행정적 제재	48
(2) 형사적 제재	49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49
제6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50
1. 약관법 개요	50
2.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 심사 기준	50

(1) 개요	50
(2) 면책조항의 금지	51
(3) 손해배상액의 예정	52
(4) 계약의 해제·해지	53
(5) 채무의 이행	54
(6) 고객의 권익 보호	54
(7) 의사표시의 의제(擬制)	55
(8) 대리인의 책임 가중	55
(9) 소송 제기의 금지 등	56
3. 약관의 규제	56
제7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57
1. 표시광고법의 목적 및 규제 이유	57
2. 적용 대상	57
3.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58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의 구체적 유형	58
(2)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구체적 유형	58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구체적 유형	59
(4) 비방적인 표시·광고의 구체적 유형	59
4. 법 위반 시 제재	60
[부록]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절차	61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체크리스트	63
하도급법 준수 체크리스트	6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규칙	67

제1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1. 기본 개념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민간, 공공 등을 포함)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함
-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모든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약칭) 소관 법률, 시행령, 고시 등 법규 전체를 의미함

2. CP의 유용성

- 조직이 CP를 구축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법 위반으로 인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 및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모범거래모델)
 -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전 예방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비용 감소(공정위 조사 및 법원 소송 대응 관련 비용 및 시정조치 등에 따른 과징금 비용 등 최소화)
 - 공정거래 법규 위반에 따른 기관 이미지 실추 예방
 - 공정위 CP등급평가 인센티브(A등급 이상 등급에 따라 과징금 감면,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 위원장 표창 등)
 - 임직원 공정거래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 주도(입찰, 도급업체 등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3. CP의 8대 도입 기준

[표 1] CP의 8대 도입 기준

	기준	내용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효과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로 제작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최고경영자 및 계약·지출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 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운영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영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및 개선조치

4. CP등급평가제도

- CP등급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이상 CP를 운영하고 등급평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매년 1회 신청 기관의 CP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임
- CP 8대 기준(요건)을 CP의 구축, 확산, 운영, 평가라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평가한 후, AAA(최우수), AA(우수), A(비교적 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로 등급을 부여함

[표 2] CP등급평가 항목

평가차원	평가항목
I. Construction (CP의 구축)	C1.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C2. 최고경영자의 지원,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II. Diffusion (CP의 전파 및 확산)	D1. 자율준수편람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III. Operation (CP의 운영)	O1. 사전감시체계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IV. Evaluation & Feedback (평가와 피드백)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표 3] CP등급 및 인센티브

CP등급 (유효기간 2년)	과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위원장 표창
AAA	최대 20%	2년	면제	2년 연속 취득시
AA	최대 10%	1년 6개월	감경	2년 연속 취득시
A	-	감경	감경	-

제2장 경기문화재단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1. 우리 재단 CP 주요 사항

(1) 자율준수관리자

- 자율준수관리자는 재단의 CP 운영을 총괄하는 직원으로 이사회가 임명함
-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신하거나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 추천함
- 인권감사실이 공정거래 담당으로서 자율준수관리자(인권감사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
- 자율준수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CP 운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요구
 -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 및 CP 기준과 절차의 대내외 공표
 - 자율준수편람의 제·개정
 - CP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법규 위반 및 CP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사
 - 공정거래 법규 위반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 CP 운영 관련 인센티브 제도의 구축 및 대상 임직원의 선정
 - CP 관련 효과성 평가 및 다음 연도 CP 운영계획을 포함한 각종 경영계획에의 반영
 - 부서별 CP 담당자 지정

(2) 자율준수편람

- 자율준수편람은 재단 임직원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를 위하여 CP 운영 기준, 절차, 사례 등 CP 관련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뜻함
- 공정거래 담당은 조직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 시 위험관리 부서를 최우선으로 함

(3) 자율준수교육

-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CP 관련 연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CP 관련 교육 이수 는 임직원의 의무임
- CP 관련 교육은 정기 교육과 수시 교육이 있으며, 수시 교육은 정기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강 교육과 특별한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특별 교육이 있음

(4) 내부감시체계

- 재단은 일상 업무에서 법 위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내부에 신속히 보고하고 조치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5) 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CP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6) 법 위반 행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CP 규정 위반 행위 등을 확인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함
- 제재 절차, 방법, 기준 등에 대하여는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으로 약칭) 및 징계 관련 규정을 따름
- 행동강령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각장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업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 공정위 소관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13개 법률이 있음
(<http://www.ftc.go.kr>)

[표 4] 공정위 소관 법률의 유형

구 분	해당 법률
독과점규제 및 경쟁보호	공정거래법
중소조직보호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보호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특성 및 역할

- 공정위는 당초 경쟁당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1년 4월 1일 설립되었으나 그 이후 중소기업보호 및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음
- 공정위는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부서로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으며, 처분을 위한 전 단계로서 강제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압수수색 권한은 없으며, 자료제출 명령 권한을 갖고 있음), 조사 후 처분을 위해 합의제 의결기구인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의 합의에 의해 처분 내용을 결정함

(3) 우리 재단과 관련한 공정거래 법규

- 우리 재단은 공정거래법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대기업 집단 규제, 독과점을 규제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제, 결합 규제와는 관련이 없으나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과는 관련이 있음
- 하도급법은 제조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 우리 재단에게 해당되며, 공정경제 모범거래모델에서는 공공기관이 발주자로서 하도급업체나 협력사가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하도급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는 현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 재단 멤버십을 운영함에 있어 약관법이 적용되며, 각종 홍보물과 관련하여 표시광고법이 적용될 수 있음
-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중 일부가 적용될 수 있음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표 5]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① 공동의 거래거절 ② 기타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① 가격차별 ② 거래조건차별 ③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④ 집단적 차별
경쟁사업자 배제	① 부당염매 ② 부당고가매입
부당한 고객유인	①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②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③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① 끼워팔기 ② 사원판매 ③ 기타의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① 구입강제 ② 이익제공 강요 ③ 판매목표 강제 ④ 불이익 제공 ⑤ 경영간섭
구속조건부거래	① 배타조건부거래 ②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사업활동 방해	① 기술의 부당이용 ②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③ 거래처 이전 방해 ④ 기타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 행위	① 부당한 자금지원 ② 부당한 자산·상품지원 ③ 부당한 인력지원 ④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일상적인 경영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 재단의 경우 사업 운영상 외부 기업체와의 용역·공사 등의 거래가 많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이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재단의 거래상 지위가 우월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업무 진행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됨
- 아래 내용은 공정위가 제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의 내용 중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추가하여 작성한 것임
- ※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공정위 홈페이지에 수록된 공조직·공공기관 관련 900여건의 사례 중 약 235건을 분석한 결과(235건 외에 나머지 사건은 공조직·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담합이 발생한 건에 해당), 대부분의 사건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 특히 불이익 제공금지 위반 사건에 해당됨

2. 거래거절

(1)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사업자와 공동하여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거래거절이 금지되는 이유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됨

- 위법성의 판단기준

공동의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관련 시장'이라 함은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말함.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는 여러 사업자와의 거래개시 또는 계속이 제한되므로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봄. 단,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거래거절을 하여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 재고부족,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거래거절이 합리적인 경우
- 거래거절이 있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합리적인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고 미달 사업자와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 효율성 증대효과가 큰 경우

(2) 기타의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되며,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됨
 - 거래거절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이므로 생산 또는 판매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음
- 위법성의 판단기준

단독의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관련 시장'이라 함은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말함

-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사업영위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대체거래선을 큰 거래비용 없이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거절의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

-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거래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거래를 위해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물품·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차별적 취급

(1) 가격차별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
- 위법성 판단기준

가격차별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고, 이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을 고려하여 판단함

-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 가격차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가격차별 정도가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지속적이지 여부

- 가격차별을 하여도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 가격차별이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 당해 가격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용역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가격 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 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2) 거래조건차별

- 특정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 외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거래조건 차별이 당해 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집단적 차별

-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취급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행하는 경우

- 합리적 이유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복수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덤핑판매를 하거나 온라인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판매업자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싸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고 다른 판매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서게 하는 행위

4. 경쟁사업자 배제

(1) 부당염매

-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 위법성 판단기준

염매 행위가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규모의 경제 등 이유로 당해 시장에서의 신규진입이 단기간 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회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회가를 회하는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기관 물품구매입찰에서 사업자가 자사가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됨으로써 다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2) 부당고가매입

-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로, 통상 거래가격이란 시장에서 사업자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수준을 의미함
-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고가매입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 경쟁사업자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수급이 원활한지 여부와 다른 대체재를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가매입으로 인해 경쟁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거나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합리적 이유없이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함으로써 사실상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5. 부당한 고객유인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자사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 행위로, 이익 제공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제공되는 이익에는 리베이트의 제공이나 가격할인,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부과되어야 할 비용의 감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 소극적 이익 제공도 포함됨
- 위법성 판단기준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출판사가 자사의 서적을 교재로 소개 또는 추천하는 교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제약이나 처방증대를 위하여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과다접대 등을 하는 행위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위법성 판단기준
 - 기만 또는 위계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기만 또는 위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기만 또는 위계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할인판매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량만을 할인 판매 대상으로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미끼상품)
 - 경쟁사업자의 부도 임박,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방해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
 - 거래방해에 의해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행위자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경쟁사업자와 고객 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 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자사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매장 내의 외진 곳에 진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6. 거래강제

(1) 끼워팔기

-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임대도 포함)을 자사 또는 자사가 지칭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상품인지 여부
 - 끼워팔기 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 시장에서 시장력이 있는지 여부
 -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를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2) 사원판매

- 임직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상품 또는 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씩 할당하면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최고경영자 등에게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보고하고 공식적 계통을 통해 판매도려를 하는 경우

7. 거래상 지위의 남용

(1) 금지 이유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 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됨
-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는 거래상 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간 거래관계에서 완화된 것이므로 거래상 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 우리 재단 입장에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민사 문제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거래상 지위의 존재를 전제로 금지 행위 유형을 주의하여야 함

(2) 행위 유형

1) 개설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의 하나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세부 유형으로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5개 유형이 존재함

- 우리 재단과 관련될 수 있는 금지 행위 유형은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3가지 유형임

2) 이익제공 강요

-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경제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됨
- 이익제공 강요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됨

3) 불이익 제공

- 대상 행위
 -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함
 -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 검사 방법, 계약 해지 조건 등이 포함됨
 -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음
 -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 절차에 의해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거래조건 설정·변경
 -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계약서상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가 고가라는 지적이 있을 경우 거래 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불이익 제공
 -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2%로 약정하였으나, 준공검사 시 일반적으로 20%로 상향조정하여 징구한 행위
 -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인상 요인을 불인정하거나 자사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 지위남용성 거래거절)

4) 경영간섭

- 대상 행위
 -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광고 시 자사와 사전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업무용 차량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관련 사례]

-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미지급한 사례(한국가스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건, 의결 제2015-090호, 2015. 3. 30.)
 - 사실관계: 한국가스공사가 2009. 6. 10.~2011. 8. 19. 기간 동안 12개 건설사에게 ‘김제-부안, 고창-영광, 장성 주매관 건설공사’ 등 총 6건의 공사를 위탁한 후 공사현장 여건변경 및 공법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설사에게 공사대금을 증액 조정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내부 감사 결과 설계변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지적을 받게 되자 증액한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함. 이 외에도 여러 건의 건설공사 위탁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및 계약보증수수료 및 공사 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

- 공정위 판단: 위와 같은 행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조적이 발주하는 공사계약과 관련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1,201,000,000원 부과)
-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시 조정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한 사례(경기도시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건, 의결 제2016-015호, 2016. 1. 11.)
 - 사실관계: 경기도시공사가 2009년 이후 9개 건설사에게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 등 11건의 공사를 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로, ‘광교신도시 생태하천 및 특수구조물 조성공사’ 1건을 대안입찰공사로 위탁하였음. 이후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신규비목이 발생하게 되자, 해당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단가의 93.4%-99.9% 수준으로 조정하여 총 1,223,573천원을 감액함
 - 공정위 판단: 지방계약법 및 계약서에 경기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공정하지 못하고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법과 계약서에 따라 공정한 거래를 하게 하고자 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됨(시정명령 및 과징금 2,108,000,000원 부과)
-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가 아닌 최초 계약시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한 사례(한국수자원공사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건, 의결 제2015-088호, 2015. 3. 23.)
 - 사실관계: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 7. 18.~2012. 7. 30. 기간 중 ‘시화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로 위탁하였는데 공사의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 신규비목이 발생하게 되자,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단가의 88-97.7% 수준으로 조정하여 총 705,000천원을 감액하고, 2013년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위탁한 후 공사의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물량이 증가하게 되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최초의 계약시점에서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총 5,900천원을 감액함

- 공정위 판단: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준 것이며 공조적이 발주하는 공사계약과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1,026,000,000원 부과)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시설 설계, 시공 및 용역과정에서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건 (의결 제2016-022호, 2016. 1. 22.)
- 사실관계: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 소송이 증가하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최소화를 위한 현장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간접비 및 경비 관련 추가요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징구함. 철도시설 설계·시공 일괄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단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함. 공단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거래상대방에게 대납하도록 요구함
- 공정위 판단: 공사기간 연장으로 간접비 등 추가적인 공사비용이 발생한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계약 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인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자사의 편의를 위해 이를 원천 차단하고자 시공사로부터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징구함으로써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하였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점에서의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증액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단가를 낮게 조정하여 지급한 것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임.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거래상대방에게 납부하도록 전가한 행위는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시정명령 및 과징금 732,000,000원 부과)

8. 사업활동 방해

- 사업활동 방해는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는 행위(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거래처 이전 방해) 및 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모든 행위(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유형이 있음

9.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행위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
-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4% 범위 이내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공정거래법)

1. 개념

- 부당한 공동행위는 흔히 담합 또는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등을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업무상 유의사항

우리 재단은 경쟁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담합의 주체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임직원이 담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음

- 담합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가장 위법성이 중한 행위로서 위반 시 재무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구속 등 형사제재가 수반되기 쉽다는 점
- 공정경제 모범거래모델에서 민간조직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재단에 요구되는 점
- 담합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라는 점. 즉, **재단 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간 담합이 발생하고, 우리 재단 소속 직원이 교사하거나 방조하였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2. 합의의 개념

- 법조문에서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 협정과 같은 명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어떤 형태론든 의사의 일치기가 있으면 합의로 인정되며, 심지어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됨
- 부당한 공동행위는 이러한 합의만으로 법 위반이 성립되며, 실행 여부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아님

○ 합의의 추정

-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공동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품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아래에 제시하는 사항들은 추정을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음
 -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특정 조직의 가격, 산출량 등 결정을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경쟁 조직의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경우
-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 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 개정 공정거래법은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담합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정보교환'을 담합의 유형에 추가하였음

3. 경쟁제한성

-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수량·품질·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은 규제당국인 공정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격, 공급량, 시장분할에 대한 담합 및 입찰담합은 행위의 속성상 당연히 경쟁제한적인 것으로 인정됨(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담합을 경성카르텔이라고 부르며, 그 이외의 담합을 연성카르텔이라고 부름)
 - 경성카르텔: 가격협정, 공급제한협정, 시장분할협정, 입찰담합
 - 연성카르텔: 거래조건협정, 투자조정(설비제한)협정, 상품의 종류·규격제한협정, 회사설립협정, 기타 사업활동방해협정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류

-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협정 등 9개 유형이 공정거래법에 열거되어 있으나 우리 재단과 가장 관련이 있는 입찰담합과 경성카르텔에 해당하는 유형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록함

(1) 가격협정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폭)를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 및 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가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 계산의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 과당경쟁금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행위

(2) 공급제한협정

-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
-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에 대한 합의 유형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가격담합이거나 시장분할 협정인 경우가 많음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할 것을 합의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경우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경우

(3) 시장분할협정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 간에 거래지역 또는 고객집단(즉, 시장)을 나눠서 상호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를 하는 행위
 -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합의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 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4) 입찰담합

- 입찰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등을 합의하는 행위
- 입찰담합은 경성카르텔의 하나로 독점규제법(공정거래법)을 운용하는 국가에서는 모두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은 국가재정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분야임
- 공정거래법 외에도 입찰담합은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에서도 규제하고 있고, 입찰 발주 기관에서도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음
- 입찰담합의 유형
 - 입찰가격담합
 -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수주자 선정)
 -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수주물량 등의 결정
-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닌 행위
 - 사업자가 지명경쟁입찰의 지명 이전의 단계에서 제도상 정해진 발주자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와 연락이나 조정 등이 없이 입찰 참가에의 의욕, 기술 정보(유사 업무의 실적, 기술자의 내용, 해당 발주 업무의 수행 계획 등) 등을 발주자에게 설명하는 것
 - 지명경쟁입찰에서 지명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연락·조정 등을 하거나 요청 등을 받은 일 없이 사업경영상의 판단에 의해 입찰을 사퇴하는 것

[관련 사례]

-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 건
 - 사실관계: 2015년 1월~2017년 2월 기간 동안 군포문화재단·마포문화재단·수성문화재단 및 구리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11건의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사전에 투찰 가격을 정함

- 공정위 판단: 개별 입찰에서 품목별로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기 위한 의도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로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제한되었다고 판단됨(시정명령 및 과징금 13,000,000원 부과)

○ 전시조명 등 관련 용역 입찰 건

- 사실관계: 광주 전시장, 울산 전시장, 인천 전시장 조명 입찰 건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결정함
- 공정위 판단: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고 제안 가격을 합의하여 실행함으로써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 제도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점,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자들이 자사의 영업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참가 여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면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행위는 각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됨(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00,000원 부과)

5. 제재와 자진신고제도

(1) 제재

-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법 위반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
 -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10% 내에서 부과
- 형사적 제재
 -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제70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이 가능함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제재는 아니지만, 담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의 하나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 특히 공공기관 발주 건에 대해 입찰참가자 간의 담합은 손해배상소송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는 무과실책임과 손해배상액 예정제도(손해액을 특정하지 못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법관이 명할 수 있는 제도)의 특칙이 있음

(2) 자진신고제도

- 자진신고제도 또는 리니언시(Leniency)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조직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하는 제도임
- 첫 번째 자진신고자(1순위)는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완전 면제받게 되며, 두 번째 신고자(2순위)는 과징금(50% 감경) 및 시정조치를 감경받을 수 있음
- 엠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 제도는 진행 중인 담합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다른 담합에 대한 증거를 첫 번째로 제공하면 현재 조사 중인 담합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 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음

공정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접수처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 전자우편: Leniency@korea.kr
- 팩스: 044-200-4444
- 문의처: 카르텔총괄과 044-200-4541

제5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1. 하도급법의 목적 및 특성

(1) 목적

-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 하도급법의 주된 목적이며,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협력사)가 대등한 지위라면 체결하였을 거래내용을 의미함

(2) 특성

- 하도급법은 당초 출발이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이라는 점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함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합의에 이르게 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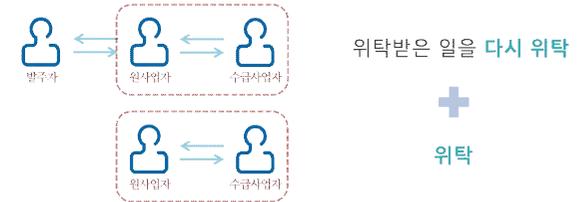
업무상 유의사항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어서 '합의'보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비록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래상 지위가 거래상대방에 비해 우월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2.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거래관계를 의미함

[그림 1] 하도급거래의 개념



-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특별법으로 우리 재단의 경우 사업 운영상 외부 기업체와의 용역·공사 등의 거래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이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한다면 재단의 거래상 지위가 우월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진행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는 바임

3.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 내용

[표 6]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원사업자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교부, 서류보존 • 내국신용장 개설 • 하도급대금 지급 • 관세 등 환급액 지급 • 공급원가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금금 지급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원사업자 금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특약 설정 • 물품 등의 구매 강제 • 부당반품 • 물품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 부당한 경영간섭 • 탈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부당한 위탁취소 • 대금감액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 부당한 대물지급 • 보복조치
발주자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보존 • 신의성실의 원칙준수 • 원사업자 위법 행위 협조 거부 	

(1) 하도급계약 체결 단계

1) 서면 교부 및 서류의 보존

- 서면 교부 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이해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공정위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기재사항(7가지)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법정기재사항>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역무의 위탁 시 제외)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상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및 하도급 거래의 중요사항을 담은 서면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사전 서면발급의무 예외
 - 재해, 사고로 인한 긴급복공공사를 하는 경우 등 위탁시점에 의무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을 발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하며,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해야 함
 - 서면발급의무 추정제도
 - 원사업자가 구두발주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통지로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통지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

[표 7] 보존대상 하도급 거래 관련 자료

연번	보존대상	근거
1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법 제3조제1항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법 제3조제6항
3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법 제8조제2항
4	검사결과 통지서	법 제9조제2항
5	감액 서면	법 제11조제3항
6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법 제12조제3제2항
7	계약변경(변동) 내역 통지서	법 제16조제2항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영 제6조제1항 제2호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이 기재된 서류 (어음결제 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	영 제6조제1항 제3호
10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영 제6조제1항 제4호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할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영 제6조제1항 제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영 제6조제1항 제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영 제6조제1항 제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서류	영 제6조제1항 제8호
15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관련 서류	영 제6조제1항 제7호

2) 부당한 특약의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규제함
- 이 규정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흔히 '갑질'로 표현되는 행위 유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 부당한 특약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판단함
 -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계약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예: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
 -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발생한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전가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전가
 - 천재지변 또는 전쟁·화재·전염병·폭동,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 전가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업무상 유의사항

- 부당한 특약은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있어도 내용이 부당하면 처벌됨
-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부당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을 참고해서 특약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에게 특약을 사전에 송부하여 검토시간을 충분히 주고, 수급사업자가 특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함
- 당사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운임 비용 또는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임 비용 또는 보관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책임 분담에 관해 편향적인 보상 조항(원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지 않아야 함

[관련 사례]

- 불공정 계약조항 설정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판단되어 조치된 사례(한국토지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건, 의결 제99-47호, 1999. 4. 13.)
 - 사실관계: 한국토지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97. 3. 14.자로 용지규정시행세칙 제73조제2항에 환매특약 등기 및 그 변경·말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고 개정하여 해당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에도(1997년 750백만원, 1998년 647백만원) 불구하고, 여전히 각 지사에서 사용하는 용지매매 계약서 상에는 환매특약 설정 및 말소 등기비용 중 일부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매수인이 환매특약 설정 및 말소등기 시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음
 - 공정위 판단: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한국토지공사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됨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272백만원 부과)

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음,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계약금액의 10/100)을 해야 함

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법 위반 유형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법 제4조제2항제1호)
 - 협조 요청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금액 할당(법 제4조제2항제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취급(법 제4조제2항제3호)
 - 수급사업자에게 종전 계약보다 발주량이 늘어날 것처럼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시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조건의 착오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법 제4조제2항제4호)
 -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법 제4조제2항제5호)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 적용(법 제4조제2항제6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법 제4조제2항제7호)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법 제4조제2항제8호)

업무상 유의사항

- 수급사업자들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 경영상황,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단가를 조정해야 함
- 경쟁입찰로 계약의 당사자를 선정할 경우, 최저입찰가가 예정가를 초과하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함
- 예정가격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예정가격이 미리 정하여져 있음을 회사 내부 자료로 남기거나 공중을 통해 추후 예정가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예정가격의 산정 절차가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가져야 함
-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문건은 보관하도록 함

[관련 사례]

- 다른 부문의 단가 인상을 약속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 사실관계: 기아자동차는 34개 수급사업자에게 쏘렌토 등 다른 차종에서 납품단가를 인상해줄겠다고 약속하고, 리오 등 차종의 부품 단가를 인하(0.9%~29.9%)하였으나, 실제로는 단가 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들이 25억 원의 손실을 입게 함
 - 법원의 판단: 기아자동차는 납품단가 인상을 통한 손실보전 등 사후조치에 관하여 내부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하된 납품 대금을 전액 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보전해 줄 것처럼 부품업체들을 기만한 것으로 판단함
- 일률적 단가 인하 사례(포스텍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건, 2014부사0457)
 - 사실관계: 포스텍은 2012년 4월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으며, 2011년 1월경에도 발주자로부터 단가 조정요청을 받아,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79,000천원을 회수함
 - 공정위 판단: 포스텍과 발주자 간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및 부당감액 행위에 해당함
- 예정가격 초과를 이유로 최저입찰가를 재협상한 사례(현대엔지니어링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건, 의결 제2008-233호)
 - 사실관계: 현대엔지니어링은 2006년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도장 Shelter 신축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등 4개 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예정가격 내 최저 금액 입찰업체를 낙찰예정업체로 결정한다”라고 현장설명을 한 후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 공정위 판단: 현대엔지니어링의 하도급 관리 규정에 “입찰 실시 전에 예정가격을 확정하여 밀봉하여 보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건과 관련하여 예정가격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실시하면서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함

(2) 하도급거래 이행 단계

1) 부당한 위탁(발주)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함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수급사업자의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 발생, 영업취소·영업정지 처분,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조 등의 착수 거부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함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비록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합의의 진정성(절차 및 내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에 해당함
- 부당한 수령거부는 납기일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수령 또는 인수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부당한 수령거부의 판단기준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수령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거부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 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의 대상이 됨
- 발주취소사유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어야 함
-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정산하고, 정산합의서를 작성해야 함
- 수급사업자가 선행 작업의 납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후행 작업의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급자재를 상당 기간 지연하여 공급한 사실로 인해 납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됨
- 수급사업자가 위탁을 받아 납품한 목적물 중 일부를 당사의 주주실패 또는 지연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함

2) 부당반품의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함
 - 부당한 위탁취소: 납품 전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부당한 수령거부: 납품하는 때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부당반품: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부당반품의 유형
 - 불명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근거한 반품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또는 클레임
 -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모델단종·판매부진·재고증가·보관장소 부족·소비위축·경제상황 변동 등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업무상 유의사항

- 반품 사유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설정해야 함
- 클레임약정서를 사전에 교부해야 함
- 사전에 서로 약정한 계약 규정대로 반품을 하되, 반드시 검사결과를 같이 통보해야 함

3) 검사 및 검사 결과 통지 의무

- 검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반적으로 결정될 경우, 목적물 완성 및 납품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준시점이 불명확해짐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함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하며, 검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은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i)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ii)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검사기일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됨
- 검사는 원사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

업무상 유의사항

- 검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와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과 관련한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 당사자간의 검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제3의 기관에게 검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법정검사기일(10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없음
-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함

[관련 사례]

- 검사결과 미통지 후 하자를 이유로 한 대금 미지급 사례(엔에스인터내셔널의 불공정거래 건, 2014서제2223)
 - 사실관계: 엔에스인터내셔널은 다운점퍼를 수령한 후 대리점 판매과정에서 오리털 빠짐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반품 및 제품불만이 제기되자 검사기관에 다운점퍼에 대해 깃솜털 투과성 검사를 의뢰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A/S를 요구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거부하여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함
 - 공정위 판단: 원사업자인 엔에스인터내셔널이 다운점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고, 목적물 수령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음. 또한, 목적물 수령 후 물품 관련 하자로 인하여 판매가 부진하고 이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루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이유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4)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 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의 명목과 방법,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일체의 감액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성은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며,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판단됨
- 감액금지 위반 유형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단가인하에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에도 인하된 단가를 적용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예: A사는 B사에게 조립용 부품을 제조 위탁한 후 B사는 A사의 검사에서 합격된 조립용 부품을 A사의 보관 창고로 운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포장지의 일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A사는 납품 대금의 30%를 감액)
 -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사게 하거나 원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적정한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
 -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그 밖의 경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업무상 유의사항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 산정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 수급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하는 경우, 검사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확인한 후 해당 목적물의 금액만큼 감액이 가능함
-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 규정에 따라 감액이 가능함
- 감액을 하기 전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감액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함

[관련 사례]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사례(진성이엔지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고발요청 건, 2015부사 1907)
 - 사실관계: 진성이엔지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영진테크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i)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ii) 생산성이 낮은 자사의 생산라인 운영 요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으며, iii) 자사의 납품처 위치 변경에 따른 물류비 증가분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6,500천원을 감액함
 - 공정위 판단: 진성이엔지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감액 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약 197,000천원의 피해를 입었고, 진성이엔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가 100%인 상황에서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어 결국 폐업까지 이르게 되는 등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 고발 조치함

5)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행위 금지

-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기술자료 제공 요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사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전자파일 접속·열람 허용),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
 - 기술자료 유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사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음. 단,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정기재사항을 미리 협의하고 기술자료요구서를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고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는 체결 후 7년간 보존하여야 함

<기술자료요구서 법정기재사항>

- 기술자료 제공 및 요구 목적
-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비밀유지계약서 법정기재사항>

-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위반에 따른 배상
- 기술자료의 반환, 폐기방법 및 일자

○ 손해배상 책임

- 공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출을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강제로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사업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함(법 제35조제1항)
- 공급사업자의 기술을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손해의 5배까지 공급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함(법 제35조제2항)

[관련 사례]

- 금형제작 상세 도면 요구 사례(엘지하우시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건, 2013제하3664)
 - 사실관계: 엘지하우시스는 2003년부터 공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대부분 자신이 설계한 금형 설계 도면을 제공하면서 금형 제작을 위탁하여 납품받았으나, 15개 금형의 제작을 위탁할 때는 공급사업자에게 제품 도면만을 제공하고 금형은 공급사업자에게 스스로 설계하여 제작하도록 한 후, 금형 수정·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상세 도면의 제공을 요구함
 - 공정위 판단: 엘지하우시스는 시험생산 과정에서 금형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 발생 시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음

6) 부당한 경영간섭(전속거래 강요 행위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공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8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사업자로 하여금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전속거래 강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시 발주처에서 공급사업자의 원가정보를 필수 제출자료로 지정하여 원가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요구
 - 계약의 특성상 실비를 정산하는 것이 적절한 항목이 있는 경우 공급사업자에게 해당 항목의 실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
 - 다른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에게 부여된 공급사업자 관리 및 감독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
 - 원사업자가 상생협력과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
 - 원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공급사업자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협약체결에 따른 실적 확인을 위해 공급사업자와의 협약체결 내역을 요청
 - 원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고 그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공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하거나 권하고,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
 - 공급사업자의 효율성 증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급사업자가 컨설팅 받고자 하는 경영전략 관련 정보를 요청
 - 원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직업교육, 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정보를 요청
- 금지 행위의 예시
 - 공급사업자에 대해 거래단절, 물량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거래조건으로 내걸면서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특허로 개발한 부품이 아닌 일반부품의 제조를 공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해당 부품을 자신에게만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 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몰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

[관련 사례]

- 재하도급거래 관련 부당한 경영간섭 사례(웅진코웨이(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건, 2008 하개2356, 제2009-032호)
 - 사실관계: 대우전자(주) 등 21개 수급사업자에게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부품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2차 수급사업자와 직접 재하도급 단가를 결정한 후 동 단가대로 거래하도록 함
 -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재하도급거래 시 단가, 물량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단가결정에 직접 개입한 것은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이 경영의 본질적인 사항임을 감안할 때 수급사업자의 2차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율적인 납품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써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로 인정됨
- 부당한 경영간섭 판례(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주8522 판결)
 - 사실관계: OO전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승인원(Specification Sheet)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그 승인원에는 회로도, 부품의 종류와 구체적 기능, 동작원리뿐 아니라 원자재 구매처 및 제조공정 등 구체적인 조립방법까지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수급사업자 관리 담당 인력을 선정하게 하고 그 인력으로 하여금 2차 수급사업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 법원 판단: 품질 유지 목적을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내용을 간섭한 행위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함

(3) 하도급대금 지급 단계

1)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을 의미함
- 목적물의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그 정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추가공사 및 공사중단, 계약해지 등으로 정산이 되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의 목적물 인수일은 추가공사의 완료일, 공사중단일, 계약해지일 등으로 봄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이는 어음금이 결제되지 못한 것이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 하자이행을 목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 유보하는 것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해당함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대금 지급기일인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
-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관련 사례]

- 민원보상비와 지체상금이 하도급대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미지급한 사례(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 사실관계: A는 C공사 중 일부를 B에게 건설위탁하였고 B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나 B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인근 가옥에 균열이 생기는 등 민원이 발생하여 보상비가 들었고 공사중지명령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위 보상비와 지체상금 등을 합한 액수가 하도급대금을 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임

2) 선금금 지급 의무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선금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 지급 시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어음만기일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지급의무 등이 적용됨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 하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해당 하도급대금 조정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과 관련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조정받은 내용을 반영해 주어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4)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계약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사게 하거나 원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다음 행위는 금지됨
 -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5)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됨
- 조정신청일부터 10일 경과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양 당사자는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에게 조정신청 협의가 가능함

6) 하도급대금 연동(납품대금 연동제)

-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함
-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함

- 연동 예외 사유
 -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 단기(90일 이내) 계약인 경우
 - 소액(1억원 이하) 계약인 경우
 - 양 당사자가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그 취지와 사유를 '미연동합의서' 형태의 서면에 분명히 적어야 함)

(4) 기타 금지 행위

1)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2조의2)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포함)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
-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

2) 반복조치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원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5)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의무사항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때(수급사업자의 요청 불필요)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관련 사례]

- 인천광역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의 건(의결 2005-06)
 - 사실관계: 인천광역시는 여성의 광장 건립공사 중 공연장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동의서도 함께 접수하고,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나 공사 완료 후 잔여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 공정위 판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있는 인천광역시의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함

4.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하도급대금 지급, 법 위반 행위의 중지, 부당특약의 삭제 또는 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
- 과징금: 관련 하도급대금의 최대 2배까지 부과

(2) 형사적 제재

-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
-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음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하도급법 위반으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증명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전환됨
- 하도급법은 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감액금지, 기술자료 유용, 보복조치 관련하여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 손해액의 3배~5배(기술유용의 경우)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제6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1. 약관법 개요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함(법 제2조제1호)
- 약관은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작성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고, 특히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가 각종 보험, 여객 및 화물 운송, 전기 및 전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해당되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 우리 재단의 경우 지지씨(GGC)멤버스를 운영하며 이용약관을 두고 있으며, 지지씨멤버스 이용약관 외에도 박물관, 센터 등의 이용약관 또한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경우로 업무상 주의가 필요함

2.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 심사 기준

(1) 개요

- 약관법은 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중첩적으로 두고 있음
- 일반기준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추정하고 있음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관련 사례]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의결 제2001-078호)
 - 약관 내용
 - 전기공급약관 제88조(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부담): 법령에 전선로의 설치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가공전선로의 시설이 가능한 지역에서 지중전선로의 시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요청자가 그 차액을 부담함
 -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제67조(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 부담): 전기간선시설을 가공으로 설치함이 타당함에도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청에 따라 지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지중으로 설치하는 데 따른 추가공사비(지중설치 시와 가공설치 시의 차액)는 요청자가 부담함
 - 공정위 판단: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의 설치방법을 임의로 결정하여 요청한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지중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도 지중설치비용과 가공설치비용의 차액을 일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지중설치비용과 가공설치비용의 차액을 전액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됨

(2) 면책조항의 금지

법 제7조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관련 사례]

-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매매계약서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의결 제99-54호)
 - 약관 내용: “을”은 매매농지에 대한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면적부족, 내용 불일치 등을 이유로 대금감액, 대금지급의 지연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책임을 “갑”에게 묻지 아니하기로 함
 - 공정위 판단: 위 약관조항은 면적 부족 또는 내용 불일치 등에 있어 목적 용지의 변경 사유 및 그 정도를 명백하게 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경우에 매도인의 법률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농지매매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 있어 매수인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7조제3호에 해당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인정됨

(3) 손해배상액의 예정

법 제8조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관련 사례]

- 약관 내용: 상가분양계약서 제4조(임대료) 조항에서는 임차인이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매월 체납액의 10%를, 체납액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액의 5%를 초과과태료로 부과함
- 공정위 판단: 위 약관조항은 연 180%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을 정하였는데 이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율을 현저히 초과하여 손해배상부담을 부담시킨 것임

(4) 계약의 해제·해지

법 제9조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목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관련 사례]

- 약관 내용: 방문판매업자의 청약철회약관조항에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조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철회에 따르는 비용 부담은 없으나 기불입된 대금은 환불받을 수 없음
- 공정위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약철회는 영업사원의 판매공세에 본의 아니게 충동구매하고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을 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위 약관조항은 철회기간을 7일 이내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불입된 대금은 환불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포기하도록 박탈하는 조항이며, 계약의 청약철회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제3호에 해당됨

(5) 채무의 이행

법 제10조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6) 고객의 권익 보호

법 제11조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상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관련 사례] 대한석탄공사의 연탄공장시설 개선 및 공해방지시설 용자차용금약정서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의결 제99-52호)

- 약관 내용: i) 대한석탄공사가 채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ii)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일 전일지라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일부 지점 폐쇄 시)를 상환함

- 공정위 판단: 기한이익상실제도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익을 허용하고 이행기에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위험성이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변제일 도래 전이라도 채권자로 하여금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기한이익의 상실사유는 계약의 존속이 어려울 정도의 채무자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 등이 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했으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임. 위 약관조항은 피심인의 채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피심인의 일방적 해석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제2호에 해당함

(7) 의사표시의 억제(擬制)

법 제12조

제12조(의사표시의 억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8) 대리인의 책임 가중

법 제13조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9) 소송 제기의 금지 등

법 제14조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관련 사례]

- 약관의 내용: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관하여는 회사의 재판적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
- 공정위 판단: 분쟁 발생을 예상하여 재판관할을 당사자간의 특약 또는 개별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나, 사업자와 고객 간의 거리에 이용되는 약관상에 피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하고 있는 약관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규정보다 고객의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 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됨

3. 약관의 규제

- 공정위는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 사용 금지 규정(법 제17조)을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는 행정지도의 일종이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행정관청이 작성하거나 인가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해당 행정관청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말하며, 약관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위는 2000년 2월부터 「표준약관 표지(마크제)」를 시행하고 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청한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조정이 성립함

제7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1. 표시광고법의 목적 및 규제 이유

-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및 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
- 사업자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소비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자에게 유리한 정보는 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축소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부당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왜곡하여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2. 적용 대상

- 표시란 사업자가 상품 등에 관한 자사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 등의 용기, 포장,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 포장 등을 말함
-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함
 - 전단·팸플릿·건본 또는 입장권
 -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빌론 또는 전광판
 - 인터넷 또는 PC통신
- 우리 재단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홍보물, 팸플릿 등 각종 광고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므로 업무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3.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표 8]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유형	내용	근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법 제3조제1항제1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법 제3조제1항제2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법 제3조제1항제3호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법 제3조제1항제4호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의 구체적 유형

- 실제로는 콩기름이나 들기름 등 기타 식용유를 섞어서 판매하면서 “참기름”이라고 표시·광고한 경우
- 실제로는 50%가 실크, 50%는 레이온임에도 “100% 실크” 또는 “실크”라고 표시·광고한 경우
- 한국에서 제조된 상품임에도 상품사용설명서, 포장용기 등에 영어, 일본어 등으로 표시하여 마치 미국산 또는 일본산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2)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구체적 유형

- 제조자·판매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 제품·용역의 품질·종류·수량·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 제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은폐 또는 누락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축소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구체적 유형

- 맥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열처리 여부가 객관적으로 맥주맛의 우열을 결정짓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사업자의 비열처리 맥주가 경쟁사업자의 열처리 맥주에 비하여 맛의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 상품의 품질, 성능 등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수의 항목을 시험한 자료 중 사업자에게 유리한 몇 가지 항목만을 자의적으로 선정해서 평균치를 구하거나 그래프로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당초 시험결과를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의 구체적 유형

- 소비자가 사업자의 상품과 경쟁사업자의 상품을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광고상에 사용함으로써 경쟁사업자 상품에 대하여 근거 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을 크게 강조하여 행한 표시·광고

[관련 사례]

- 사실관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한 뒤 파워블로거들에게 자사의 자동차 제품과 자사가 후원하는 공연에 대한 광고를 블로그에 게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였음
- 공정위 판단: 각 블로그의 광고 게시물에 피심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마치 블로그 운영자들이 피심인과 상관없이 독자적 또는 자발적으로 광고한 것처럼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0천원 부과)

업무상 유의사항

- 명백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가 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수치로 성능을 강조할 경우, 객관적인 실험·연구 결과로 증빙되어야 함
- 인플루언서, 전문가 등을 이용한 광고 진행 시, 추천인 또는 보증인과 광고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함
-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 등을 하는 경우,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4. 법 위반 시 제재

- 표시광고법 위반 시 책임 주체
 - 거짓, 과장, 비방 광고 내용을 직접 제작, 작성한 자
 - 광고매체 등에 광고를 집행한 자
 - 광고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귀속된 자
 -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보고 광고주라고 인식하게 되는 자

업무상 유의사항

- ‘표시’를 한 제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사도 책임을 지게 됨
-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한 경우라도 광고주도 책임을 질 수 있음
- 책임이 있는 경우 모두 제재를 받으며, 당사자간에 어느 일방이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관계없이 제재를 받음
- 광고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게 됨(무과실책임 부담)

-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
 - 시정조치: 해당 위반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수명사실 공표, 정정광고 등
 -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관련매출액 산정 곤란 시 5억원 이하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억원 이하

[부록]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절차

1. 개요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부서의 하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임
- 공정위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표 9] 전원회의와 소회의

구분	전원회의	소회의
의장	위원장	상임위원(주심위원)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소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 등 의제·개정 • 이의신청의 재결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공정거래법 제37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건 • 승인·인정·인가사항 • 집행정지의 결정 • 과태료 •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약관법상 시정요청)

2.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 사건의 개시
 - 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의해 사건이 개시됨
 - 신고는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음
 - 직권인지는 익명의 신고, 언론의 기사, 기타 신고 외의 방법에 의해 공정위가 법 위반의 혐의를 인지한 경우임
- 사건의 심사
 - 사건의 법 위반 여부를 심사관이 심사하는 단계임
 - 현장조사, 자료제출명령 등 강제조사권은 부여되어 있으나 압수 및 수색 권한은 없음
 - 심사결과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의 심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구함

- 심의 및 의결
 - 사안에 따라 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된 전원회의 또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가 개최되어 심의 및 의결을 하게 됨
 - 전원회의는 다수결로, 소회의는 만장일치로 의결함
 - 의결은 무혐의, 경고, 시정조치명령, 공표명령, 과징금부과, 고발 등의 조치로 함
- 불복절차
 - 공정위 의결로 처분을 받은 피심인은 공정위에 재심을 요구하는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부록]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체크리스트

※ 우리 재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재단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진단하기 위하여 아래의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항	점검 사항
부당한 거래거절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 또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중단 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제한하는가? 일반 사양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 사용조건 사양 등을 명기하여 특정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타 업체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가?
가격차별	거래가격의 격차실정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거래 지역/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가?
거래조건차별	객관적 기준 없이 특정 사업자에 대해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가?
불이익 제공	거래상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하는가?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가?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재단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가?
경영간섭	인직원의 선임·해임·변경 등에 대하여 우리 재단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거래중단,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가? 거래상대방 직원의 부적격성을 결정하는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가?
거래상 지위남용	계약서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의 관계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는가?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가?
계약서 작성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통상 인정되는 권리의 행사 등을 제한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가?

[부록] 하도급법 준수 체크리스트

※ 우리 재단은 발주자로서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외에는 하도급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협력사의 수급사업자에 대해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 및 자재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하도급대금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체크리스트가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점검하는 데에 참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편람에 수록하였습니다.

항목	근거	점검 사항
입찰공고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지된 입찰 조건에 따라 당사자를 선정하였는가? 사전에정가는 적절하게 결정되었는가? 경쟁입찰 시, 낙찰된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유찰 기준은 사전에 고지되었는가?
발주 및 계약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 이전(건설위탁의 경우, 착공 이전)에 서면이 교부되었는가? 계약서 작성 시 거래상대방의 서명을 받았는가? 계약서에 하도급법상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포함되었는가? 계약서 외 별도 항목의 내용을 추가할 경우 유관 부서(감사부서, 계약부서 등)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 물량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서 또는 보충서면, 또는 정산서 등을 교부하였는가?
특약 검토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가? 특약에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있는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한 특약이 있는가? 책임 분담에 관해 재단에게만 유리한 편향적인 보상조항을 설정하였는가? 불량이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필요 이상의 비밀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는가?

<p>대금 결정</p>	<p>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 결정 시 거래상대방에게 대금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수익계약 시 불합리한 사유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단가 인하를 요구하였는가?
<p>위탁취소 및 수령거부</p>	<p>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취소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거래상대방에게 고지되었는가? • 재단의 생산계획 취소 등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였는가? •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는가? •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기 통보하였는가? • 거래해지, 거래거절, 거래종료 전 거래상대방에게 새로운 거래처 선택의 기회 등 충분한 유예기간(1개월)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절차를 진행하였는가?
<p>부당반품</p>	<p>하도급법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이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의 납기, 공기 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였는가?
<p>검사</p>	<p>하도급법 제9조 (검사의 기준· 방법·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합의하여 검사기준·방법·시기를 정한 후에 재단이 일방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하였는가? • 지금까지 적용되던 검사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통상 합격품으로 판정될 수 있었던 제품을 불합격 처리하였는가? • 물품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거래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

<p>하도급 대금 감액</p>	<p>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이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 납품하지 못한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였는가? • 대금지급시점의 일반 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 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였는가? • 하도급대금을 인할할 경우, 인하시유와 기준을 거래상대방에게 사전에 전달하였는가?
<p>대금지급</p>	<p>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였는가?
<p>하도급 대금의 조정</p>	<p>하도급법 제16조의2 (원재료가격변동 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가격변동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였는가?
<p>기술자료 요구</p>	<p>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금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가? •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에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 방법 등을 적시하여 제공하였는가? • 대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가? • 세부적인 원가자료 요구 시 서면으로 요구하였는가?
<p>기술자료 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존 계약을 파기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의 기술자료를 임의적으로 다른 사업자에 제공하였는가?
<p>경영간섭 및 보복조치</p>	<p>하도급법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재단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 목적과 관계없이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였는가?

[부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규칙

제1장 일반원칙

제1조(목적)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칙(이하 'CP' 규칙이라 한다)은 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재단과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 원칙) CP 규칙은 재단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본 규칙에 반하는 재단의 방침 또는 규정이 있을 경우 CP 규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CP 규칙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란 'Compliance Program'의 약자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 CP는 CP의 취지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의한 내부 준법 시스템을 뜻한다.
3. 자율준수는 임직원이 CP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4.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고시, 지침을 의미한다.
5. 최고의사결정기구(이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재단의 이사회에 해당한다.
6. 자율준수관리자는 재단의 CP 운영을 총괄하는 직원으로, 대표이사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7. 자율준수부서장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CP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자를 뜻한다.
8. 공정거래 담당은 CP 운영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해당한다.
9. 위험관리 부서는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로서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부서를 뜻한다.
10. 임직원은 고용 형태나 종류와 무관하게 재단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뜻한다.
11. 제재 조치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CP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로서, 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 관하여는 재단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12.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 담당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판단한 행위로서, 행정기관, 사법기관, 기타 제3자에 의한 문제 제기 및 판단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자율준수관리자가 법 위반 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3. 자율준수편람은 재단 임직원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 운영 기준, 절차, 사례 등 CP 관련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뜻한다.

14. 인센티브는 CP를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임직원 또는 부서에 제공하는 혜택을 뜻한다.

15. 이해관계자는 재단과 거래하는 모든 고객, 거래처 등을 뜻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1절 최고경영자의 의무와 권한

제4조(최고경영자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CP가 재단 운영의 최우선이 되는 정책임을 보장한다.

② 대표이사는 효과적인 CP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에게 예산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③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자율준수 문화의 저해 행위 등 CP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④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스스로 준수한다.

제5조(최고경영자의 권한) ①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추천하며, 이사회는 CP 운영 관련 최고의사결정권한을 가진다.

② 대표이사는 CP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자원을 배분한다.

③ 대표이사는 CP 운영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등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①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효과적인 CP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지식이 풍부하거나 CP를 포함한 준법경영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험관리 부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되어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신하거나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 다시 추천한다.

제7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
2. 위 1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
3. 위 1호에 해당하는 임직원 중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권한
4. 기타 CP의 운영에 필요한 권한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제8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CP 운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요구
2.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 및 CP 기준과 절차의 대내외 공표
3. 자율준수편람의 제·개정
4. CP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6.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법규 위반 및 CP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사
7. 위 6호에 따라 공정거래 법규 위반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8. CP 운영 관련 인센티브 제도의 구축 및 대상 임직원의 선정
9. CP 관련 효과성 평가 및 다음 연도 CP 운영계획을 포함한 각종 경영계획에의 반영
10. 부서별 CP 담당자 지정

제9조(공정거래 담당의 업무) ① 공정거래 담당 소속 직원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 ② 공정거래 담당은 위 1항에 따른 업무 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며, 재단의 CP 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3절 임직원의 역할과 의무

제10조(임직원의 의무) CP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및 자율준수편람에 대한 숙지
2.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노력
3. 업무수행 중 확인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한 제보
4.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여한 CP 관련 교육 목표 달성

제11조(사전업무협의)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수행할 경우 공정거래 담당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경기문화재단 일상감사 운영 규칙」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다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신청 관련 자료 작성과 제출
3. 위 호 이외에 임직원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의 수행

- ② 임직원은 사전업무협의 시 공정거래 담당에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원하는 경우 사전업무협의 전 공정거래 담당에 협의 대상 업무 여부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적용 여부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내제보) 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였을 경우 이를 공정거래 담당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즉시 제보하여야 한다.

- ② 사내제보와 관련해서는 「경기문화재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을 따른다.

제3장 CP의 운영 등

제1절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제13조(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CP 도입 및 운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대표이사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 ② 위 1항에 따른 공표 및 의지 천명은 홈페이지를 포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표 및 의지천명 대상에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2절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교육

제14조(자율준수편람) ① 공정거래 담당은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위 1항에 따른 배포 시 위험관리 부서를 최우선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 담당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개정 및 변경을 연 1회 이상 검토하여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임직원에 대한 교육)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CP 관련 연간 교육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하고 자율준수편람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취지 및 목적
2. 교육 대상자 및 부서
3. 교육 전담강사의 지정 및 역할 정의
4. 교육내용 및 교재 활용 방안
5. 교육의 방법(온라인 / 오프라인 교육 구분 등)
6. 교육성과 평가 방법 및 후속조치 방안
7. 연간 교육일정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대표이사과 관리자를 상대로 한 교육과정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직원 및 공정거래 법규 위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 담당은 CP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단의 교육 전담 부서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전담 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공정거래 담당의 지원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교육 시행 후 임직원의 이해수준 등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CP 관련 교육에 대하여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하고 공정거래 담당이 시행한다.

제3절 내부감시체계

제16조(내부감시체계) ① 재단은 일상 업무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내부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조치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위험 평가
2. 사전업무협의제도
3. 직접보고체계
4. 사내제보시스템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결과를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담당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발생 등 확인을 위한 위험 평가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차 사전 실태조사는 부서별로 지정된 자가 공정거래 담당이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업무 관련 공정거래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공정거래 담당에 보고
2. 2차 현장 심층조사는 공정거래 담당이 위 1호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내부 제보를 통하여 확인된 공정거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직접 조사

② 위 1항에 따른 결과 보고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 회차 및 기간
2. 시행의 주체(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 외부 감사, 감사팀)
3. 평가 대상 부서(선정기준 포함)
4. 평가 결과(사업부서별, 임직원별 등)
5. 중간 이상 위험성을 발견 시 이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
6. 기타 미비점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 방안

제18조(사전업무협의제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 업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② 공정거래 담당은 위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회신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 담당은 위 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사전업무협의의 실적은 연 1회 이상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직접보고체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명백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자율준수관리자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유관부서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직접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위 1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사내제보시스템)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이 포함된 사내제보시스템을 공정거래 담당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라 설치된 사내제보시스템에 제보한 임직원이 타 부서의 보복, 차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 소속 직원은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제보한 내용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예방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규칙 제22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제재 및 인센티브

제21조(법위반 행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공정거래 담당과 사전 협의없이 업무를 강행한 경우
2.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하여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검찰 고발 및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재단에 손해의 배상 등 금전적 피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위 1호 또는 2호 행위로 인해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위 1항에 따른 행위 이외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또는 CP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로서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경고 처분 등 제재 조치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의 상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절차, 방법, 기준 등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직원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칙」 및 「경기문화재단 징계절차 및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22조(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활용을 통한 재단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예방에 기여한 임직원 및 CP 교육 실적 우수 임직원 등 재단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CP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인센티브로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타 인센티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제5절 효과성 평가 및 경영예의 반영

제23조(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CP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CP 효과성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CP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 및 인식 수준
2. 연간 CP 운영 계획 대비 실제 시행 성과
3.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성과
4. CP 관련 교육성과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발생 빈도 및 재단에 미친 영향
6. 공정거래 담당의 CP 업무 운영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
7. CP 규칙 및 자율준수편람 등 CP 운영 관련 기준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
8. 공정거래 담당 소관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CP등급평가를 신청하여 평가 등급을 취득하거나 외부 전문가 집단에 효과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24조(효과성 평가의 활용 등)**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칙 제23조에 따른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위 1항에 따른 보고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인사 제재 조치, 예산과 조직 운영의 변경, CP 규칙 개정 추진을 의결하여 대표이사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지받은 대표이사 또는 자율준수관리자는 그 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2항에 따른 조치 완료 시 그 결과를 재단 임직원에게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타

- 제25조(문서관리)** ① 공정거래 담당은 CP 운영에 관한 문서 일체를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분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② CP 관련 문서는 보존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보존 기간은 「경기문화재단 기록관리 규칙」을 따른다.
- 제26조(권한의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칙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대표이사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본 편람의 내용이나 공정거래 법규 준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 담당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인권감사실 공정거래 담당(CP 담당)
박지은(031-231-7288, parkje@ggcf.or.kr)